

가족법 개정

가족법 개정 작업 서둘러야 한다

호주제 · 동성동본불혼제 개정 1순위



한때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된 가족법 개정운동이 현재 소강상태에 있다.

96년 12월 31일로 동성동본 결혼의 한시적 구제는 끝난다. 78년, 88년에 이어 한시적 구제조치는 이번이 세번째. 내년부터 동성동본 결혼 예비자들은 다시 비밀 혼례식을,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사생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던 가족법 개정 약속은 과연 지켜질 것인가. 1년 남짓 임기를 앞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올 정기국회에서는 가족법과 관련한 법률안이 어디에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작년 5월 서울가정법원이 동성동본불혼제도 위헌재청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유보하고 있다.

가족법 개정운동이 소강상태를 맞는 데는 한창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80년 후반과 달라진 사회분위기, 대국민 홍보를 맹렬하게 펼쳤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YWCA 등 범여성계의 소극적인 활동, 이에 반해 전국적인 산하조직을 두고 있는 유림단체의 강도 높은 대정부 압력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8년 제정 이후 62년, 77년, 90년 세차례 가족법이 개정될 때마다 핵심적으로 떠올랐던 호주제와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가 내년안에 성사될 것인지는 여성계의 견제에 달려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족법개정의 쟁점은 현행 가족법이 90년 3차 개정에서 대폭 수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고 '현대사회의 생활 양식과 맞지 않는 제도'의 존치에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가부장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호주제

도와 동성동본불혼제. 이들 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일본의 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폐지돼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남아선호사상의 주범 호주제도

이제는 국가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성비파괴, 이 뿌리의 근원인 호주제는 90년 3차 개정에서 내용이 수정됐으나 제

도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 장남의 호주 상속을 포기(제991조)하고 분가를 할 수 있게 했으며(제788조), 다른 집에 양자로 (현행 875조 삭제) 갈 수 있게 하고 호주의 권리와 의무를 종전보다 대폭 완화했으나 호주승계순위는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남아선호사상의 뿌리를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평가이다.

광배회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은 "결국 가족 구성원의 우두머리인 호주는 남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우

가족법 개정운동의 두번째 골간을 이루고 있는 동성동본 불혼제. 현행 '동성동본 혈족 사이이면 혼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혼인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계 8촌, 모계 8촌 이내의 혼인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호주제폐지와 함께 가족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돼 왔다. 정부가 78년, 88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때부터 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는 지적을 들었다. 게다가 '근친혼 금지'라는 명분은 우생학적으로 전혀 설

동성동본불혼제 부계혈통 유지위한 이념불과

동성동본불혼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주요한 이유로 이회배 가족법학회장(인천대 법학과)은 "8촌이 넘으면 전혀 해로울 바가 없다는 유전학적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부계혈통을 표시하는 동성동본인 사람끼리는 무조건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비율의 유전인자를 받은 모계 혈통과는 혼인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부계 혈통과만 무제한적으로 혼인을 금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전혀 합리성이 없다"며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젊은이들의 혼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이라고 이회장은 꼬집는다.

가족법 개정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었다. 다음 대선에도 가족법 개정이 '선거 상품'으로 전락되지 않으려면 개정작업준비를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한다.

<최진숙 기자>

호주제 우리나라만 유일 동성동본불혼 우생학적 근거 희박

두머리를 중심으로 가정이 운영돼 여자는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속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가족법 개정운동은 부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가정을 꾸미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력이 없어 단지 부계혈통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동성동본불혼제는 호주제도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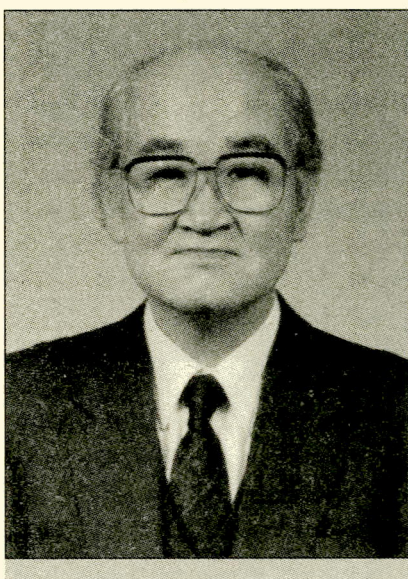
가족법 무엇이 더 개정되어야 하나

재혼금지 기간규정 · 친생부인제도 등 개정과제 산적

김주수 / 경희대 법대 객원교수

현행민법은 1958년에 제정돼 1960년에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 <친족편>과 <상속편>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배치되는 규정들 많이 가지고 있었다. 1977년 그 중 일부가 개정되었지만 매우 미진했고 1990년에 다시 대폭 개정돼 상당한 정도의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쪽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의 규정을 둬으로써 아직도 헌법정신을 완전히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해 그것을 완전히 실현하고 나아가 이론적으로나 실무상 불합리하여 그 개정이 요망되었던 규정들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법을 제정할 때 이미 일본에서는 민법 개정에 의하여 '호주제도(일명 가계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호주제도(일제시대에 호주를 기준으로 일가를 한 호적



에 기재하는 호적제도가 일본제도 그대로 도입됨으로써 '호주'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가 유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법제도(장남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 조상봉사를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부계혈통중심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민법 개정 당시 헌법에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에는 이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호주제도를 규정하였으며 그것이 아직도 민법에 존치되고 있다.

둘째, 동성동본불혼의 규정 남계혈통중시의 규정으로써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혼인할 권리는 헌

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더 이상 존치될 수 없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윤리적, 우생학적 측면에서 문제되는 것인데 동성동본불혼제는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당연히 삭제되고 근친혼 금지규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있다.)

셋째, 재혼금지기간의 규정은 부성치정이 충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민법에 두었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DNA 감정의 발전으로 친자관계의 감정에 대한 정확성이 1백퍼센트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친생부인제도는 남편만이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인권은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혈연진실주의와 부부평등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혈연진실주의와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처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고 제척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혈연진실주의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있다.)

다섯째, 민법상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가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있어서 대법원 판례는 이를 부득이 입양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호적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혈연관계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를 친생자로 호적에 기재하는 완전양자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친권규정은 1990년에 개정된 바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녀 복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인지된 혼인외의 자녀와 이혼한 부모의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는 부모가 협의로 정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친권행사자의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협의 내용이 타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주수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다 93년 정년 퇴직, 94년부터 경희대 법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93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 95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사법시험 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친족상속법>, <민법총칙>, <채권총론> 등이 있다.